
WTO 상소기구의 위기와 개혁방안에 대한 연구*

곽동철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과장

A Study on the Crises and Reforms of World Trade Organization Appellate Body

Dongchul Kwak^a

^aCenter for Trade Studies and Cooperation,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South Korea

Received 31 March 2020, Revised 20 April 2020, Accepted 25 April 2020

Abstract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s in great peril. The Appellate Body has ceased to function last December as the United States has blocked the appointment of new Appellate Body members since 2017. The focus of this study is on the examination of US's discontent on the Appellate Body and various efforts to reform the Appellate Body. In a recent report, the US Trade Representative raises its concerns on the Appellate Body including 90 days mandatory deadline, transitional rules for outgoing Appellate Body members, scope of appeal, advisory opinions, precedent, recommendation, and overreach without offering any viable solutions. Some of WTO members and experts proposed several Appellate Body reform measures but agreement between WTO members is unlikely in a foreseeable future. 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such as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s, separ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for trade remedies, unilateral retaliatory measures without WTO authorization. Rules-based multilateral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imperative to small open economies like Korea.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Appellate Body reform discussions with other WTO members to keep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from collapsing.

Keywords: Appellate Body Crises, Appellate Body Reforms,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Unilateral Retaliatory Measure, WTO

JEL Classifications: F13, F53

* The contents of this paper are the opinions of the authors and are not related to the position of the institution.

^a First Author, E-mail: dc.kwak@kita.or.kr

© 2020 The Korea Trade Research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I. WTO 상소기구 위기의 배경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최종심 역할을 담당하는 상소기구(Appellate Body, AB) 위원 7인 중 6인의 임기가 모두 만료되었다. 3인의 재직 상소기구 위원 중 토마스 그라함 위원과 우잘 싱 바티아 위원이 2019년 12월 10일 퇴임하였지만 새로운 위원이 선임되지 않아 2019년 12월 11일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WTO의 상소기능이 정지된 상태이다.

하급심인 패널(panel) 절차는 진행되지만 최종심인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되어 WTO 분쟁해결제도의 전반적인 약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WTO의 상소심은 상소기구 위원 3인으로 이루어진 재판부가 담당하는데 2020년 3월 26일 현재 상소기구 위원이 1인밖에 남지 않아 새로운 사건의 심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Fortnam (2020)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유일한 상소기구 위원인 자오홍 위원이 과거 중국 정부 산하기관에서 재직할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자오 위원의 상소기구 위원 자격을 최근 문제삼은 바 있다. 상소심 재판부가 구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패널 판정이 상소된다면 상소심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법적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된다. 제소국이 패널 절차에서 승소하더라도 피소국에 대해 보복조치도 부과할 수가 없는 것이다.

현재 WTO 상소기구가 처한 위기의 배경에는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미국은 상소기구의 구조적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미 2017년 중순부터 신규 상소기구 위원의 선임을 거부해 왔다. 의사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는 WTO의 절차규정으로 인해 미국의 반대로 새로운 상소기구 위원이 선임되지 못하였고 이는 결국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로까지 이어졌다.

Bown and Keynes (2020)는 미국의 상소기구에 대한 불신이 일련의 상소기구 판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미국 행정부의 판단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취한 무역구제조치(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상소기구가

불리한 판정을 수차례 내림으로써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행정부의 무역구제조치 권한이 과도하게 제한받는다라는 불만이 팽배했다. 또한 중국 정부 및 국유기업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는데 WTO 분쟁해결제도가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불만도 미국 행정부 내에서 꾸준히 이어졌다.¹⁾ 중국 정부의 불법적인 산업 보조금 정책과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WTO 분쟁해결제도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자 미국은 대중국 견제전략으로 WTO 분쟁해결제도보다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1974년 통상법 제301조 등 일방적 보복조치를 활용하는 빈도를 높여가고 있다.²⁾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미국이 주장하는 WTO 상소기구의 구조적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방안을 쟁점별로 비교·분석한다. 또한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까지 제시된 논의내용을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현재의 WTO 상소기구 위기의 배경을 설명한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미국이 주장하는 상소기구의 문제점을 상세히 검토한다. 이와 함께 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WTO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혁 방향을 비교·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상소기구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기능이 정지된 상소기구를 대체하기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를 살펴본다. WTO 회원국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안된 대안뿐 아니라 통상법학자들이 제시하는 대안과 WTO 회원국이 국내적인 차원에서 준비 중인 대안까지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상소기구의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서 일방적 보복조치의 실사가 가능한지 우리의

1) 중국이 분쟁해결제도의 관할권 밖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 역시 WTO 분쟁해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기타 국가 간의 분쟁에 제3자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Chun Cheong-Ghi, 2015).

2)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는 1962년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외국의 불공정무역관행에 대해 일방적 보복조치를 부과하는 1974년 미국 통상법 제301조의 WTO 규범 합치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Yin and Choi Chang-Hwan (2019)과 Chung Man Sik and Hong Sung Kyu (1996) 참고.

국내규정을 살펴본다. 결론에서는 본문의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며 글을 맺는다.

II. WTO 상소기구 개혁 논의 분석

WTO 분쟁해결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통상법학자들의 비판과 회원국의 불만은 그동안 단편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Bacchus and Lester (2019)는 WTO 체제에서 선례가 갖는 의미를 법적 예측가능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며, Lee Hyo-Young (2020)는 상소기구 제도의 문제점을 절차적 문제와 사법적 권한 문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상소기구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기존 문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Hillman (2018)은 상소기구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는 이론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Lester (2020)는 상소기구 제도에 대해 미국과 기타 국가가 갖는 견해의 차이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문헌들은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포괄적이지 못하다. 상소기구 개혁 논의도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입수가 가능한 가장 최신 문헌과 자료를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상소기구의 문제점과 개혁 논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최근 WTO 상소기구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상세히 비판하는 심층보고서를 발표했다(USTR, 2020). 이에 앞서 WTO 주요 회원국들은 상소기구의 개혁방안을 담은 14개국³⁾ 제안서 및 4개국⁴⁾ 제안서를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였다(WTO, 2018a; WTO, 2018b). 또한 상소기구 개혁 논의의 좌장으로 임명된 데이비드 워커 뉴질랜드 대사 겸 일반이사회 의장도 상소기구 기능 회복을 위한 ‘일반이사회 결정문 초안(워커 제안서)’을 발표하

였다(WTO, 2019d). 이하에서는 USTR이 제기한 상소기구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각 쟁점에 대해 WTO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소기구 개혁 논의를 검토한다.

1. 상소심 기한

1) 쟁점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WTO의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DSU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패널 절차와 상소 절차가 이루어지는 기한을 구체적으로 제한한다. 특히 상소심은 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이 기한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소기구가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에 서면으로 지연 사유와 예상 완료기한을 통보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DSU 제17.5조). 90일이라는 명시적 기한이 DSU에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소기구가 이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2) 미국의 주장

상소기구가 DSU에 규정된 상소심 기한을 무시하는 사례가 2011년 이후 증가하였으며, 합의된 규범을 지키지 않는 상소기구의 행태로 인해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더욱 약화되었다. 상소심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면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DSU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성상 피소국은 상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WTO협정 위반조치를 폐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상소심 기한을 위반하는 상소기구의 관행이 고착화되어 분쟁 해결에 불필요한 쟁점까지 상소기구가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으로 심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권고적 의견이 추후 분쟁사건에서 선례로 인정되는 등 상소심 기한

3) EU, 중국, 캐나다, 인도,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 한국,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멕시코, 코스타리카, 몬테네그로.

4) EU, 중국, 인도, 몬테네그로.

위반은 절차적 하자를 넘어 실질적인 문제점까지 야기하고 있다.

3) 개혁안

미국이 제기하는 상소심 지연 문제에 대해 기타 WTO 회원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다수의 DSU 개정안이 WTO에 공식적으로 제시되었다. EU와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은 분쟁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 상소심 기한을 90일 이후로 연장할 수 있도록 DSU 제17.5조를 개정하는 개혁안을 제안하였다(WTO, 2018a). EU, 중국, 인도, 몬테네그로 등 4개국은 상소심 진행을 촉진하여 상소심 기한을 준수하는 방안으로 (i) 현행 7인인 상소기구 위원수를 9인으로 증원, (ii) 상소기구 위원들의 전임화, (iii) 상소기구 사무국의 인력과 재정 보강 등을 제시하였다(WTO, 2018b). 이 외에 워커 제안서는 상소기구에 상소심을 90일 이내에 완료할 의무를 부여하고, 분쟁당사국의 동의하에 상소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WTO, 2019d). 분쟁당사국과 상소기구 위원장은 이러한 합의를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해야 한다(WTO, 2019d).

2. 퇴임 상소기구 위원들의 연장 업무

1) 쟁점

상소기구 위원들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DSU 제17.2조). 일반적으로 상소기구 위원들의 선임과 재임은 분쟁해결기구에서 WTO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된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업무절차(Working Procedures) 제15항에 따라 진행 중인 사건의 상소심이 완료될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상소기구 위원들의 임기를 관행적으로 연장해 왔다. 이미 임기가 만료된 상소기구 위원들이 임기 이후에도 상소심에 참여하는 관행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2) 미국의 주장

미국은 상소기구 위원을 선임할 권한은 WTO 회원국의 고유한 권한이며 임기가 만료된 상소기구 위원들의 상소심 참여를 회원국들의 동의 없이 상소기구가 독자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퇴임 상소기구 위원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상소기구의 관행으로 인해 회원국들의 승인 없이 임기가 만료된 상소기구 위원에게 수십만 달러가 보수로 지급되는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3) 개혁안

일부 WTO 회원국은 상소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상소기구 위원들의 임기 중 변론이 시작된 사건의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건의 심리 중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배당된 사건의 심리 및 판결을 완료해야 한다는 DSU 개정안을 제시하였다(WTO, 2018a). 4개국 제안서에는 좀 더 구체적인 개혁안이 제시되었다. 임기가 만료된 상소기구 위원이라도 후임자가 선임되기 전까지 최대 2년 동안 기존 상소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임기 만료 수개월 전에 신규 상소기구 위원을 선임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자동적으로 개시되어야 한다(WTO, 2018b).

워커 제안서는 상소기구 위원들의 임명에 관한 분쟁해결기구의 권한과 의무를 명시하고 신규 위원들의 선임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워커 제안서에 따르면 WTO 회원국으로 구성된 분쟁해결기구만이 상소기구 위원직을 결정할 명시적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며, 분쟁해결기구는 결원 발생 시 위원을 선임할 의무가 있다(WTO, 2019d). 또한 퇴임 상소기구 위원을 대체할 신규 위원들의 선임절차는 기존 위원들의 퇴임 180일 이전에 자동적으로 개시되어야 한다(WTO, 2019d). 임기가 다가오는 상소기구 위원도 퇴임 60일 이전까지는 새로운 사건에 배당될 수 있으며, 임기 내에 구두변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퇴임 이후에도 해당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WTO, 2019d).

3. 상소기구의 사실판단

1) 쟁점

패널은 분쟁의 사실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뿐만 아니라 관련 대상협정의 적용가능성 및 그 협정과와 합치성을 평가하는 등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DSU 제 11조). 반면 상소는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상소기구는 패널이 완료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검토할 수 없다(DSU 제17.6조). 법적 쟁점이 아닌 사실판단에까지 상소기구가 검토범위를 확장하는 관행이 문제되었다.

2) 미국의 주장

상소기구가 WTO 회원국의 국내법과 관련된 사실관계까지도 검토하는 등 법적 쟁점 이외에 패널의 사실판단에 대해서도 심리하고 있다. 이는 회원국이 상소기구에 부여한 권한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것으로 DSU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관행이다. 특히 상소기구가 WTO 회원국의 '국내법의 의미(meaning of domestic law)'에 대해 취하는 태도가 더욱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제법의 일반적 원칙상 일국의 국내법은 그 국가의 의지를 표현하고 국가의 행위를 구성하는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내법의 의미는 WTO 분쟁해결제도 내에서 상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관계에 관련된 문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소기구가 '국내법의 의미'를 법적 쟁점으로 간주하여 자신들의 권한과 상소심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는 등 DSU의 규정에 어긋나는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 더욱이 상소기구가 회원국의 국내법을 잘못 해석하고 오류가 있는 판결을 도출하여 분쟁당사국이 불필요하게 국내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3) 개혁안

다수의 WTO 회원국들도 패널이 이미 검토를 마친 '국내법의 의미'를 법적 쟁점으로 파악하는 상소기구의 견해가 국제법의 일반원칙상

그리고 DSU 문언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미국의 입장에 동조한다. 이에 14개 회원국은 제안서를 통해 '국내법의 의미'는 패널보고서에 포함된 법적 쟁점이나 패널이 행한 법률 해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소기구가 심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WTO, 2018a). 위커 제안서 역시 '국내법의 의미'는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소심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WTO, 2019d). 또한 분쟁당사국에게 패널이 완료한 사실판단을 번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상소 과정에서 지나치게 폭넓고 불필요한 주장을 내세워 사실상 새로운 심리(de facto 'de novo review')를 개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주지시켰다(WTO, 2019d).

4. 권고적 의견

1) 쟁점

WTO 분쟁해결제도는 분쟁의 긍정적 해결을 목표로 하며 분쟁당사자가 상호 수락할 수 있으며 대상협정과 합치하는 해결책이 명백히 선호된다(DSU 제3.7조). WTO 협정에 대한 해석을 채택하는 권한은 모든 WTO 회원국으로 구성된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가 독점적으로 보유한다(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제9.2조). 그러나 상소기구가 상소기구보고서에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제시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권고적 의견의 허용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2) 미국의 주장

분쟁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 불필요한 쟁점에 관해 상소기구가 권고적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분쟁해결제도의 신뢰도가 약화되고 상소심 판결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분쟁의 긍정적 해결이 분쟁해결제도의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상소기구가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권고적 의견을 발표하여 관련 협정을 해석하거나 간접적으로 법을 제정하고 있다. 분쟁해결에 불필요한 권고적 의견 작성으로 상소심의 판결이 지연되며, 권고적 의견이 구속력 있는 선례로 작용한다면 해당 분쟁에 참여하지 않은

WTO 회원국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결국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다자무역체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3) 개혁안

14개 WTO 회원국은 상소기구가 권고적 의견을 제시하는 관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과 유사한 견해를 표명하였다. 이를 위해 분쟁당사국이 상소를 제기한 쟁점에 대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상소기구가 판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DSU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WTO, 2018a). 이를 통해 상소심 기한과 관련된 문제점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워커 제안서 역시 분쟁당사국이 제기하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 상소기구는 판결해서는 안되며, 상소기구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기된 쟁점을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WTO, 2019d).

5. 선례구속

1) 일반

상소기구는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에 따라 상소심을 진행해야 하며 대상협정에 규정된 WTO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확대하거나 축소시킬 수 없다(DSU 제3.2조). 또한 WTO 설립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을 해석하는 독점적인 권한은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가 보유한다(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제9.2조).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칙은 일반적으로 '선례구속(stare decisis)'을 인정하지 않지만 상소기구는 상소심의 판결이 선례로서 구속력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2) 미국의 주장

상소심의 판결이 선례로서 구속력이 있고 기타 분쟁사건의 패널도 이에 구속된다는 상소기구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미국 정부

의 공식적 입장이다. DSU에 반영된 위계적 구조(hierarchical structure contemplated in the DSU)로 인해 명백한 사유(cogent reasons)가 없다면 하급심인 패널도 상소심의 판결에 구속된다는 상소기구의 주장은 DSU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상소기구 보고서에 포함된 법적 해석의 선례구속이 인정된다면 협정을 해석하는 독점적 권한을 WTO 회원국에 부여한 WTO 설립협정 제9.2조가 무의미해진다. 또한 WTO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가 제한된 권한만 부여받은 상소기구의 판결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례가 발생한다. 더욱이 선례구속을 허용한다면 회원국 사이에서 새로운 무역협상을 개시할 유인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무역협상에서 이루지 못했던 목표를 회원국들이 상소기구의 해석을 통해 달성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3) 개혁안

14개 WTO 회원국은 상소기구와 WTO 회원국 간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해 선례구속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였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WTO 회원국이 상소기구 보고서 내용에 대해 자신들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도록 상소기구와 회원국이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WTO, 2018a). 워커 제안서는 분쟁해결과정에서 선례가 생성되어서는 안되지만 법적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역시 WTO 체제 내에서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패널과 상소기구가 당해 분쟁사건과 관련있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WTO, 2019d).

6. 판결 이행 권고

1) 쟁점

상소기구는 분쟁의 대상이 된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동 조치를 협정에 합치시키도록 피소국에 권고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피소국에게 제시할 수도 있다(DSU 제19.1조). 그러나 판정결과에 따라 피소국에게 권고

를 해야할지 여부는 상소기구의 재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상소기구의 입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2) 미국의 주장

미국은 패널 심리 중 분쟁의 대상인 조치가 종료된 사건의 경우에도 상소기구가 판결을 이행하도록 피소국에게 권고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판결을 이행하도록 권고할지 여부를 상소기구가 재량껏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은 DSU 제19.1조 문언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판결 이행을 권고하지 않는 예외적 상황이 DSU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으며, 상소기구에 그러한 재량권이 부여된 적도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판결 이행에 대한 권고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보복조치를 요청할 근거를 상실하며 피소국은 소송 도중 문제된 조치를 잠시 철회하고 추후 부활시키는 등 분쟁해결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3) 개혁안

14개국 제안서 및 4개국 제안서는 미국이 문 제삼는 상소기구의 판결 이행 권고 쟁점에 대한 개혁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워커 제안서는 패널과 상소기구의 조사결과와 권고 및 분쟁해결기구의 권고와 판결에 따라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한다(WTO, 2019d).

7. 월권행위

1) 쟁점

패널은 분쟁해결기구가 DSU 및 대상협정에 따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며 분쟁해결기구가 권고를 행하거나 판결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패널 보고서를 작성한다(DSU 제11조). 상소기구는 이러한 패널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을 검토하는 제한된 역할만

을 수행한다(DS 제17.6조). 그러나 상소기구가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타 WTO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월권행위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 미국의 주장

미국은 상소기구에 부여된 제한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상소기구가 기타 WTO 기구(각료회의,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등)의 권한까지 침범하는 월권행위를 행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상소기구가 분쟁해결기구의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 절차에 대해 부적절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하는 분쟁해결기구의 권한을 침범하는 등 기타 기구에 지시를 내리는 방법으로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3인으로 구성된 상소기구의 재판부가 월권을 행사하여 모든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의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한다면 이는 법적 불확실성과 WTO 기구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이어져 다자무역체제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3) 개혁안

상소기구의 월권행위에 대해 워커 제안서는 절차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분쟁해결기구와 상소기구의 협력 하에 회원국과 상소기구 간 회합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개혁방안을 제시했다(WTO, 2019d). 이러한 회합을 통해 상소기구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회원국들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8. 평가

미국은 과거에도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WTO 상소기구의 관행적 문제점을 비판해왔다. 금번 USTR의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상소기구의 문제점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문서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 상당수 WTO 회원국도 미국의 문제제기에 공감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

Table 1. Summary of Issues over WTO Appellate Body' s Malfunctioning

Issue	U.S. Argument	Reform Agenda
90 days	Repeatedly disregarding the mandatory 90-day deadline for issuing a report, which is in violation of DSU Article 17.5	AB is obligated to issue a report no later than 90 days.
Transition rules for outgoing AB members	Allowing former members to decide cases after their terms have ended, which is in violation of DSU Article 17.2	DSB is obligated to fill the vacancies of AB membership as they arise.
Domestic law	Reviewing panel' s factual findings relating to the meaning of WTO Members' domestic law, which is in violation of DSU Article 17.6	The 'meaning of domestic law' is not subject to appeal.
Advisory opinion	Rendering advisory opinions on issues not necessary to resolve a dispute, which is in violation of DSU Article 3.7	Issues that have not been raised by either party may not be ruled by AB.
Precedent	Treating a prior AB interpretation as binding precedent	Precedent is not created through WTO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 but consistency and predictability is of significant value.
Recommendation of compliance	Failing to make the recommendation required in instances, which is in violation of DSU Article 19.1	Recommendations of AB cannot add or diminish the rights and obligations provided in the covered agreements.
Overreach	Overstepping the authority by opining on matters within the authority of other WTO bodies	Regular dialogue between DSB and AB should be established.

Source: Compiled by author based on USTR (2020), WTO (2018a), WTO (2018b), and WTO (2019d).

할 어떠한 제안도 내놓지 않고 있는 미국의 형태 역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EU와 중국 등은 현재 상소기구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게 상소기구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개혁안을 요청하였다(Monicken, 2019). 그러나 미국은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USTR 보고서에도 개별 쟁점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더욱이 WTO 분쟁해결제도를 바라보는 미국과 EU의 근본적인 인식 차이로 현재 상소기구를 둘러싼 갈등이 단시일 내에 해소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미국은 WTO 분쟁해결제도를 국가 간의 '계약'으로 파악하고 WTO 협정을 해석하

고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취할 권한은 전적으로 회원국에게 있으며 상소기구는 단지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기구라는 입장을 고수한다(CSIS, 2017). 반면 EU는 상소기구가 국제'재판소'로서의 역할을 맡아 필요 시 모호한 WTO 협정을 해석하고 법에 기반하여 통상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Monicken, 2019). EU의 입장은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WTO 회원국이 어느 정도 주권 행사의 제약에 동의했다는 견해인 반면 미국은 WTO 분쟁해결제도가 회원국의 고유한 주권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상소기구의 개혁을 둘러싼 양 진영 간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Ⅲ.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모색

신규 상소기구 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 현 WTO 분쟁해결제도는 패널 절차만이 존재하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의 시절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패소국의 반대로 패널 보고서의 채택이 거부되고 일방적인 보복조치가 취해지던 GATT 시기는 힘의 지배가 국제 무역체제에 만연하던 시대였다. 이러한 GATT 시기의 불합리한 관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논의된 상소기구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중재(arbitration)를 활용하는 방안, 패널 판정을 최종심으로 확정하는 방안, 분쟁해결제도를 이원화하는 방안, 일방적 보복조치를 실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1. 임시 상소중재협정

DSU 제25조는 분쟁해결의 대체적 수단으로 중재의 활용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분쟁의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 분쟁은 중재에 회부될 수 있으며, 당사국은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DSU 제25.2조). 다른 회원국은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당사국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중재절차의 당사국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중재절차의 당사국은 중재판정을 준수해야만 한다(DSU 제25.3조). 이러한 중재절차를 활용하여 상소기구의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양자 또는 수개 국 간에 협정을 체결하여 임시로 상소중재절차를 진행하는 대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EU가 가장 적극적으로 임시 상소중재절차를 활용하고 있다. EU는 이미 캐나다 및 노르웨이와 각각 임시 '양자' 상소중재협정을 체결하여 WTO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에 대비하였다. 두 임시 양자 상소중재협정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상소중재협정은 WTO 상소심의 실질적·절차적 측면과 관행을 그대로 따르며, 상소중재 재판부는 퇴임 상소기구 위원 중 WTO 사무총장이 임명한 3인으로 구성된다

(WTO, 2019b; WTO, 2019c). 분쟁당사국은 상소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분쟁사건을 WTO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없으며, 상소기구가 정상화되는 즉시 임시 상소중재협정은 폐지된다(WTO, 2019b; WTO, 2019c).

EU는 중재를 활용한 대안적 분쟁해결절차에 더욱 많은 회원국을 참여시키고자 2020년 1월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한국, 중국 등 16개국⁵⁾과 임시 '다자' 상소중재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EU를 포함한 16개국⁶⁾은 2020년 3월 27일 기존 상소기구의 기능을 대체할 '임시 다자 상소중재협정(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을 체결하였지만 한국은 동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European Commission, 2020a). 공개된 협정 초안에 따르면 상소중재제도는 기존 상소기구와 유사하게 운영되며 10인의 중재위원단(pool)에서 3명이 순차적으로 선택되어 분쟁을 심리하게 된다(European Commission, 2020b). 최종 중재판정은 분쟁당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분쟁해결기구에 보고되지만 상소기구 보고서로 채택되진 않는다(European Commission, 2020b).

2. 패널 판정을 최종심으로 확정

DSU 제25조의 중재절차를 활용하는 대안 외에 당사국 간에 합의하여 분쟁사건을 상소하지 않고 패널 판정을 최종심으로 확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인도네시아-철강제품 수입제한사건'에서 패널 보고서가 회람되는 시기에 상소기구 위원 부족으로 상소심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분쟁사건을 상소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WTO, 2019a).

5)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대한민국,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파나마, 싱가포르, 스위스, 우루과이. 다만 미국, 일본, 인도는 동 협상에 불참.

6)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EU, 과테말라, 홍콩,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우루과이. 다만 대한민국, 미국, 일본, 인도, 파나마는 동 협정에 불참.

3. 분쟁해결제도 이원화

미국이 상소기구에 대해 가지는 불만을 해소하고 상소기구의 기능을 시급히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쟁해결제도를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Hillman(2018)은 미국이 제기하는 불만 중 상당 부분이 미국 정부가 취한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상소기구의 관점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무역구제 분쟁을 일반 통상분쟁과 구분하여 무역구제 분쟁만을 다루는 별도의 분쟁해결제도를 운영하자고 제안한다. 실제로 WTO 분쟁사건 중 상당수가 무역구제조치 관련 분쟁이므로 무역구제 분쟁을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별도의 상소심을 설립하여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상소기구 개혁을 단시일 내에 이루기 힘든 만큼 미국의 불만이 큰 무역구제 분쟁의 패널 관정을 상소 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소기구 위원 선임절차를 개시할 유인을 확보하고 기타 분쟁에 대한 상소기구의 기능을 우선적으로 회복할 필요도 있다. 다만 한국과 같은 수출지향적인 국가의 경우 상소기구의 관정을 통해 주요국가의 보호주의적 무역구제조치에 대처해온 만큼 무역구제 분쟁과 일반 통상분쟁을 구분하는 제안에 대해 기타 회원국들이 어느 정도 동조할지 선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 일방적 보복조치 시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WTO 체제 내에서는 일방적 보복조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승소국은 다자무역체제의 안정을 위해 분쟁해결기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다른 회원국에게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DSU 제23.2조). 그러나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로 분쟁해결기구가 보복조치를 승인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승소국이 일방적 보복조치를 실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EU는 무역협정 위반 조치를 취한 무역상대국이 WTO 분쟁해결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일방적으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개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European Commission,

2019). 이에 따르면 WTO 분쟁패널이 EU에 유리한 관정을 내렸으나 피소국이 상소하여 패널 관정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임시 상소중재에도 합의하지 않을시, EU는 분쟁해결기구의 승인 없이 일방적 보복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IV. 우리의 국내적 대응방안

EU가 WTO의 승인없이 무역상대국에 일방적 보복조치를 실시하게 된다면 이는 분명 법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의 약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상 WTO의 분쟁해결제도가 마비상태에 빠지고 무역상대국의 협정위반조치들에 대해 다자적인 구제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일방적 보복조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보유한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 정부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보복조치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상소기구의 기능이 마비된 이후 외국의 불법적인 무역조치로 우리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과연 국내규정상 일방적 무역보복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보복관계 등의 조치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세계무역기구법)',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규정되어 있다. 세계무역기구법 제3조는 원칙적으로 우리 정부가 WTO 협정의 기본원칙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제2조에서는 WTO 협정의 어느 조항도 우리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일방적 보복조치의 시행가능성을 열어두었다. 관세법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복관세를 규정한다. 동법 제63조에 따르면 무역협정에 규정된 권익이 부인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또는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받는 경우 우리 정부는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대외무역법 제5조는 무역협정에 명시된 우리나라의 권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우리 상품이 외국에서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에는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

치 등을 통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우리의 대외무역을 규율하는 상기 법령은 일방적 보복조치의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이의 시행요건이 '우리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이 침해될 경우', '무역협정에 규정된 권익이 부인되거나 제한된 경우',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받은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 상당히 추상적이며 또한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안고 있다. 이를 활용할 경우 오히려 부당한 차별조치 또는 불필요하거나 위장된 무역제한조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WTO 패널이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으나 분쟁상대국이 기능이 정지된 상소기구에 해당 사건을 상소하여 패널 판정을 무의미하게 만들 경우, 상소기구의 기능이 회복되기 이전까지 보복관세나 무역제한조치 등 일방적 보복조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내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과도한 상소기구 흠집내기로 다자분쟁해결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로서는 정당한 무역이익을 보호할 효과적인 수단을 잃게 된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EU와 유사하게 국내법을 정비하여 구체적 요건 하에서 일방적 보복조치를 취하면서도 외국의 통상압박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구체적이고 명확한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분쟁해결제도는 GATT 체제가 WTO 체제로 바뀌면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분야 중 하나이다. 국가 간 통상분쟁을 법에 기초하여 평화롭게 해결하는 WTO 분쟁해결제도는 다자무역체제의 '왕관의 보석(crown jewel)'에 비유될 정

도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상소기구 위원 선임 반대로 시작된 상소기구의 위기로 이제는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인 법의 지배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상소심 기한, 퇴임 상소기구 위원의 연장 업무, 상소기구의 사실판단, 권고적 의견, 선례구속, 판결 이행 권고, 월권행위 등 미국이 제기하는 상소기구의 구조적·관행적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WTO 내에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각 회원국의 입장의 차이가 뚜렷하여 상소기구 개혁에 대한 합의는 요원한 상황이다.

상소기구의 위기로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는 과거로 후퇴할 것인지 미래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 결정되는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하였다. 회원국들이 분쟁해결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발전적인 해결안을 도출한다면 다자무역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 그러나 상소기구 위원의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소기구의 개혁도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분쟁해결제도는 힘이 지배하던 GATT 시절의 분쟁해결체제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정부는 상소기구 개혁을 논의하는 다양한 협의체에 참여하여 WTO 분쟁해결제도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홍보하고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과 법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 또한 EU가 주도하는 임시 다자 상소중재협정에 조속히 참여하여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현 상황을 하루빨리 타개해야 한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여 통상압박을 피하면서도 무역상대국에 효과적으로 일방적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내규정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

References

- Bacchus, J. and S. Lester (2019), *Of Precedent and Persuasion: The Crucial Role of an Appeals Court in WTO Disputes* (Free Trade Bulletin, No. 74), Washington, D.C.: Cato Institute. Available from <https://www.cato.org/publications/free-trade-bulletin/precedent-persuasion-crucial-role-appeals-court-wto-disputes> (accessed March 29, 2020).
- Bown, C. and S. Keynes (2020), *Why Trump Shot the Sheriffs: The End of WTO Dispute Settlement 1.0* (Working Paper, 20-4), Washington, D.C.: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Available from <https://www.piie.com/publications/working-papers/why-trump-shot-sheriffs-end-wto-dispute-settlement-10> (accessed March 29, 2020).
- Chun, Cheong-Ghi (2015), "A Study o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Dispute Cases Complaint by China: A Focus on the US-Poultry Case", *Korea Trade Review*, 40(4), 263-286.
- Chung, Man Sik and Sung-Kyu Hong (1996), "Unilateral Retaliation of U.S. International Trade Law S. 301 in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Korea Trade Review*, 21(1), 307-332.
- CSIS (2017), *U.S. Trade Policy Priorities: Robert Lighthize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transcript),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vailable from <https://www.csis.org/analysis/us-trade-policy-priorities-robert-lighthizer-united-states-trade-representative> (accessed March 29, 2020).
- European Commission (2019, December 12), *Commission Reinforces Tools to Ensure Europe's Interests in International Trade* (Press Release), Brussels: Author. Available from <https://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2091&title=Commission-reinforces-tools-to-ensure-Europes-interests-in-international-trade> (accessed March 29, 2020).
- European Commission (2020a, March 27), *EU and 15 World Trade Organization members establish contingency appeal arrangement for trade disputes* (Press Release), Brussels: Author. Available from <https://trade.ec.europa.eu/doclib/press/index.cfm?id=2127> (accessed March 29, 2020).
- European Commission (2020b), *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 Pursuant to Article 25 of the DSU* (draft text). Available from <https://trade.ec.europa.eu/doclib/docs/2020/march/tradoc158685.pdf> (accessed March 29, 2020).
- Fortnam, B. (2020, March 5), "U.S.: Chinese WTO Appellate Body member is ineligible, not impartial", *Inside US Trade*. Available from <https://insidetrade.com/daily-news/us-chinese-wto-appellate-body-member-ineligible-not-impartial> (accessed March 29, 2020).
- Hillman, J. (2018), *Three Approaches to Fix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s Appellate Body: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Washington, D.C.: Washington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Available from <https://www.wita.org/atp-research/three-approaches-to-fixing-the-world-trade-organizations-appellate-body-the-good-the-bad-and-the-ugly/> (accessed March 29, 2020).
- Lee, Hyo-young (2020), "Success and Limitations of the WTO Appellate Body", *International Trade Law*, 146, 94-124.
- Lester, S. (2020), *WTO Dispute Settlement Misunderstandings: How To Bridge the Ga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st of the World* (International Economic Law and Policy Blog). Available from <https://ielp.worldtradelaw.net/2020/04/wto-dispute-settlement-misunderstandings-how-to-bridge-the-gap-between-the-united-states-and-the-res.html> (accessed March 29, 2020).
- Monicken, H. (2019, October 16), "As U.S. Presses the 'Why Question' at the WTO, Others Demand

- Solutions”, *Inside US Trade*. Available from <https://insidetrade.com/daily-news/us-presses-%E2%80%98why-question-wto-others-demand-solutions> (accessed March 29, 2020).
- USTR (2020), *Report on the Appellate Body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ashington, D.C.: Author. Available from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Report_on_the_Appellate_Body_of_the_World_Trade_Organization.pdf (accessed March 29, 2020).
- WTO (2018a),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Union, China, Canada, India, Norway, New Zealand, Switzerland, Australia, Republic of Korea, Iceland, Singapore, Mexico, Costa Rica and Montenegro to the General Council*, WT/GC/W/752/Rev.2, December 11, 2018.
- WTO (2018b), *Communication from the European Union, China, India and Montenegro to the General Council*, WT/GC/W/753/rev.1, December 11, 2018.
- WTO (2019a), *Indonesia – Safeguard on Certain Iron and Steel Products – Understanding between Indonesia and Viet Nam Regarding Procedures under Articles 21 and 22 of the DSU*, WT/DS496/14, March 27, 2019.
- WTO (2019b), *Statement on a mechanism for Developing, Documenting and Sharing Practices and Procedures in the Conduct of WTO Disputes*, JOB/DSB/1/Add.11/Suppl.1, October 21, 2019.
- WTO (2019c), *Statement on a mechanism for Developing, Documenting and Sharing Practices and Procedures in the Conduct of WTO Disputes*, JOB/DSB/1/Add.11/Rev.1, October 22, 2019.
- WTO (2019d), *Draft Decision – Functioning of the Appellate Body*, WT/GC/W/791, November 28, 2019.
- Yin, Zi-Hui and Chang-Hwan Choi (2019), “Is the U.S. Trade Expansion Act Section 232 Consistent with GATT/WTO Rules?”, *Korea Trade Review*, 44(1), 177-191.